

古代 女性天皇論

- 皇極・齊明의 경우 -

김선민*

kimmail@sookmyung.ac.kr

Contents

- I. 머리말
- II. 女性天皇論의 과거와 현재
- III. 皇極의 즉위 배경
- IV. 皇極讓位와 齊明 重祚
- V. 맺음말

Abstract

本論文は、日本の古代の女性天皇論について、特に日本の歴史上最初の讓位と同時に最初の重祚を実現した皇極・齊明を中心に、その即位の歴史的背景や讓位實現の事情、そしてその重祚の理由などについて分析した。本論文の意義、および特徴は次のとおりである。従来『日本書記』にみられる祈雨、祥瑞、災異などについての記事は、説話的、呪術的、非合理的なものとして排除されるか、あるいは作爲的、政治的な記事として見なされ、書記編者によって加筆、操作されたものとして解釈されてきたが、本論文はこれを皇極・齊明天皇の政治力、即ち女性天皇としての即位過程、および統治能力をあらわす資料として再解釈して積極的に活用した。特に従来の皇極・齊明の即位、讓位、重祚の問題についての議論が主に、日本の古代社会の特質や国内政治の問題として扱われ、また讓位の問題についても最近になって対外政策と関連づけ理解する見解があらわれているが、本論文はそれを国内政治、対外政策としてみる視点から一步すすんで東アジア全体の歴史的展開の過程およびその特徴として把握する観点を提供することで、従来の理解とは異なる観点を提供した。それは今後の古代の女性天皇論の理解において東アジアというより広い視角からアプローチする必要性を提起しているものである。

Key Words : 女性天皇, 皇極・齊明, 『日本書記』, 中繼ぎ論, 蘇我氏(여성천황, 황극·제명, 『일본서기』, 중계자, 소가시)

* 숙명여자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8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특별연구비에 의해 작성되었음.

I. 머리말

일본 역사상에는 전설적인 卑弥呼와 神功皇后와 같은 여성 통치자를 제외하고도 8인 10대에 걸쳐 여성천황¹⁾이 존재했다.²⁾ 8인으로 10대가 되는 것은 양위한 후 다시 즉위한 소위 重祚의 경우가 두 차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6세기 말부터 8세기 후반까지 약 200년 동안 8대 6인의 여성천황이 등장했다. 이와 같이 고대에 여성지배자가 다수 존재하였다는 사실은 일본 고대사의 중요한 특징으로 인식 되고 있다. 물론 비슷한 시기에 唐과 新羅에서도 여성 통치자³⁾가 등장하여 여성 리더쉽이 당시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처럼 다수의 여성천황이 연속적으로 출현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천황이 집중적으로 즉위한 6-8세기 일본은 권력의 중앙 집중으로 시작된 고대 국가체제가 완성되는 시기이다. 지방분권적인 상황을 중앙집권화하기 위해 강력한 왕권의 추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빈번하게 여성천황이 출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여성천황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존재로서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당시 여성천황이 특수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는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우선 여성천황의 존재를 기정사실로 하는 법 규정이 이미 고대 율령에 존재했기 때문이다. 養老繼嗣令1皇兄弟條의 本注에 “천황의 兄弟와 皇子는 모두 親王이라 한다(女帝(女性天皇)의 자식도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大寶令의 주석서인 「古記」에도 인용되어 있는 本注로 이미 8세기 초 大寶令의 단계에서도 여성천황의 즉위를 당연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明法家들의

1) 원래 여성천황이라는 용어는 고대 천황제가 성립한 후에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것은 기존의 女帝라는 표현이 女性天子를 의미하고, 사료 상에는 701년 대보령에 처음 등장하는 용어라는 점 등 부적절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편의상 여성천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2) 推古天皇(593-628), 皇極天皇(642-645), 齊明天皇(655-661), 持統天皇(689-697), 元明天皇(707-715), 元正天皇(715-724), 孝謙天皇(749-758), 稱徳天皇(764-770), 明正天皇(1629-1643), 後桜町天皇(1762-1770).

3) 唐의 則天大聖皇帝(690-750)와 新羅의 善德女王(632-647)·真德女王(647-654)·真聖女王(887-897)이 있다.

해석을 검토하면 여성천황의 자식 및 형제를 親王으로 인식한 것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8세기 초 대보령의 단계에서 여성천황의 즉위를 전제로 자식과 형제를 왕위계승의 가능성이 있는 친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여성천황의 實子를 즉위 가능한 親王, 內親王으로 우대하고, 女系의 왕위계승까지도 승인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⁴⁾ 그러므로 근대 이후 女性天皇否定論의 주요한 근거가 되는 男系주의는 일본고유의 전통이라는 인식과 여성천황은 특수한 존재라는 통설적 견해는 성립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그러면 여성천황의 존재를 특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관념은 어떤 이유에서 정착된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그것은 근대 가부장적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성립과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있다.

메이지22년(1899)년에 발표된 舊皇室典範 제1조는 <大日本帝國皇位는 祖宗의 皇統에 의해 男系의 男子로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어 여성천황의 즉위를 명백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은 천황의 重職을 감당해 낼 수 없다」, 든가 「여성을 천황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편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 같은 편견에 의해 여성천황의 존재는 남성천황에 비해 능력과 역할 면에서 뭔가 부족하고 장애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⁵⁾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왜 여성천황이 특수 예외적인 존재로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은 근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정당성과 부국강병 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써 근대 역사학의 성립 이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 그 결과 여성천황의 본질을 巫女 또는 중계자(中繼ぎ)로 보는 인식이 성립했다. 그러나 신에게 제사 올리고 주술적 행위에 능한 여성천황을 모두 무녀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의 단순화 내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계자(中繼ぎ)론은 왕위계승의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던 고대에는 시기와 경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황이 중계자로서의 일면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의미와 의의는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같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에는 소위 젠더문제가 인문·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페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면서 여성천황이 결코 특수예외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력과

4) 仁藤敦史 『女帝の世紀』角川書店, 2006. 8쪽.

5) 拙稿 「고대 일본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 『日本史学研究』19집, 2004년.

역할면에서도 기본적으로 남성천황과 동등했다는 인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소위 <性差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여성천황론>의 등장이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여성천황의 즉위는 성별을 넘어서 동일세대 내의 왕위계승의 원칙과 집정능력이 중시되었다는 「世代内繼承」論을 들 수 있다. 하지만 <性差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여성천황론>은 종래의 女性天皇不執政論의 안티테제로서 주창된 것으로 어디까지나 종래의 논의의 문제점을 추출하여 극복하려는 의도에서 채용된 하나의 시점이고,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性差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여성천황론>에 입각해서 논리를 전개해 나아가다 보면 여성천황이 남성천황과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도달점이 되므로 새로운 논의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⁶⁾ 이러한 가설이 가지는 맹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대에 즉위한 여성천황의 즉위사정, 왕권의 구조와 변화 등을 고대국가의 형성과정 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일본 고대 여성천황론과 관련해서 乙巳의 變으로 촉발된 대화개신과 한반도의 통일이라는 일본 고대국가 형성의 획기적 시기에 卽位와 최초의 讓位, 동시에 최초의 重祚를 실현한 皇極, 齊明天황의 경우를 중심으로 즉위의 역사적 배경, 양위와 重祚의 이유 등을 당시 국내 정치, 외교적 환경의 변화와 관련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이 같은 작업은 여성천황의 즉위 문제를 새롭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 고대 국가의 성립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기초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II. 女性天皇論의 과거와 현재

일본에 있어서 문헌에 등장하는 최초의 여성 지배자는 『三國志』 「魏志倭人傳」에 등장하는 卑弥呼이다. 卑弥呼는 3세기 전반 연합왕국의 종주국인 耶馬台國의 여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卑弥呼는 「魏志倭人傳」에 의하면 ‘鬼道에 종사

6) 遠山美都男 『古代日本の女帝とキサキ』角川書店, 2005. 273-274쪽.

하고 능히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는 기술처럼 영적우월성을 기반으로 지배하는 제사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卑弥呼를 무녀라고 규정하고, 卑弥呼의 경우를 여성천황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접근방식으로서 인식하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고대의 여성천황들은 샤먼적 속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천황에 즉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司祭, 그리고 祈雨, 祥瑞와 같은 天變災異와 관련성이 있는 여성천황을 모두 무녀라고 규정하는 것은 논리의 단순화 내지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고대 여성천황들의 공통된 특징을 무녀이라고 단정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한편 근대 일본은 家를 국가지배의 기초단위로 하고 국민을 家에 편성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 여기에 유교적 도덕관념이 결부되어 국가는 하나의 대가족이며 천황은 아버지, 황후는 어머니라는 소위 가족국가관이 완성되었다. 이 같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속에서 고대 여성천황의 존재는 근대 천황제국가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역사적 경험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본 제국과 천황에 의한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던 근대 역사학은 이 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등장한 한 것이 중계자론이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 折口信夫와 喜田貞吉을 들 수 있다.

折口는 神과 スメラミコト(天皇)을 중간에서 매개하는 존재로, 聖的役割을 가진 皇后에 의한 世俗통치가 여성천황의 始原이라고 했다.⁷⁾ 「女」라는 性과 聖的인 역할에 착목한 점은 중계자론적인 여성천황론에 커다란 관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喜田는 고대 문헌에 등장하는 천황 이외에 다른 천황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가정하고, 『続日本紀』 등 고대 사료에 보이는 「ナカツメラミコト」의 호칭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⁸⁾ 특히 『続日本紀』가 여성천황이었던 元正천황을 「中天皇」으로 기술하고 「ナカツメラミコト」로 訓讀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여성천황을 천황과 천황을 중계하는 존재로 파악했다.⁹⁾ 이 같은 중계자론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여성천황은 남성이 즉위하기 곤란

7) 折口信夫「女性天皇考」『折口信夫全集』第20巻, 中央公論社, 1956년.

8) 「ナカツメラミコト」는 『続日本紀』이외에 『万葉集』, 『大安寺伽藍縁起并流記資財帳』, 『薬師寺東塔櫓名』등에 「中天皇」, 「仲天皇」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9) 喜田貞吉「中天皇考」『喜田貞吉著作集』第13巻, 講. 談社, 1981년.

한 경우, 일시적으로 왕위를 중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견해를 명확하게 제시한 것은 井上光貞이다. 그는 여성천황이었던 推古·皇極·齊明과 즉위를 요청받았던 春日山田皇女, 倭姬의 공통된 특징이 모두 천황, 혹은 천황이 될 수 있었던 者의 女息으로 모두 황태후였던 점에 착목하여 왕위계승이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중계자로서 先帝 또는 前帝의 황후가 즉위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여성천황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였다.¹⁰⁾ 특히 6·7세기의 皇位繼承法은 兄弟相續과 직계 상속적인 성격의 大兄制를 축으로 했는데 여성천황의 즉위는 직계상속의 확립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井上の 견해는 독신이었던 元正천황이 草壁皇子와 元明天황의 女息인 점, 그리고 孝謙천황이 聖武천황과 元明天황의 女息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없다. 井上 논리의 중요한 결함은 왕위를 중계하는 역할적인 것이 아니라 왕위의 중계가 여성천황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위계승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중계성이 부여되는 것은 남성천황·여성천황이라는 성별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결국 중계자론의 한계는 “여성이기 때문에 중계”라는 성차별을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¹¹⁾ 결국 왕위 계승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성이 즉위했다는 중계자論은 여성천황이 즉위하는 데에 필요조건 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¹²⁾고 하겠다.

이 같은 중계자론은 근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上田正昭는 武烈천황 사후에 황후였던 春日大媛이 즉위하지 않고 繼體천황이 즉위한 것, 元正천황 즉위 때 首皇子가 즉위하는 것이 무난했다는 것과 같은 사례를 들어 여성천황을 중계자로 인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그리고 고대 여성 지배자들을 역할과 성격을 분석하여 여성지배자의 역사를 巫女王의 단계, 巫女王에서 여성천황의 단계, 그리고 여성천황의 단계로 나누었다.¹³⁾ 上田의 여성천황의 3

10) 井上光貞 「古代の女帝」 『日本古代国家の研究』岩波書店, 1965년. 237-247쪽.

11) 拙稿 「고대 일본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 『日本史学研究』19집, 2004년.

12) 예를 들면 齊明天皇의 경우는 中大兄皇子가 나이가 어려서 즉위할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즉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荒木敏夫, 『可能性としての女帝』, 青木書店, 1999, 39-40쪽.

13) 上田正昭 『日本の女帝』講談社, 1971년. 20-22쪽

단계변화론은 기존의 중계자론이 가지는 단순하고 일률적인 여성천황의 즉위 사정과 역할론을 비판하고, 여성천황이 특수예외적인 존재라는 고정관념의 부당성을 제기했다는 연구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 한편 小林敏男는 持統 이전의 여성천황, 즉 황태자제와 양위의 제도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여성천황을 중계자로 보는 시각 자체가 성립하지 못한다는 왕위 계승론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비판을 행하였다. 小林는 여성천황의 성립배경에는 「キサキ(后)」가 大王(천황)과 같은 동등한 신분·지위로 격상한 것을 중시했다. 따라서, 「キサキ」가 천황과 共治·補政할 수 있는 입장인 「オホキサキ(太后)」제가 성립한 継体朝傾부터, 여성천황은 왕위계승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등 위기의 상황에서 즉위할 수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 예로 推古의 경우를 들고 있다. 즉 推古의 즉위는 대외적으로 隋의 통일에 의한 동아시아의 재편, 대내적으로는 崇峻천황의 암살이라는 천황권위의 실추와 같은 절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천황의 권위를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여성천황이 필요했기 때문에 즉위했다고 이해하고 있다.¹⁴⁾ 즉 황태자제와 양위제 등 왕위계승법이 정착하기 이전 단계에서 여성천황의 즉위를 단순하게 중계자의 역할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荒木敏夫도 중계자론에 대한 새로운 비판으로 중계자론의 가변성과 역사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왕위계승 순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던 전근대 왕위 계승은 각 시대와 시기에 따라 왕권구조와 국가형태에 의해 규정되고, 역사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천황이 중계자로서의 일면을 가졌다하더라도 그 의미와 의의는 서로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중계자의 가변성이 뚜렷이 나타나는가 여부는 그 시대의 왕권 내지 국가구조에 규정된 권력투쟁의 결과에 좌우되지만, 가변성이 어떻게 분출하는가는 그 시대의 왕권 내지 국가구조의 역사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¹⁵⁾

한편 大平聰은 6-7세기 왕권의 「世代内繼承」論를 제기하여 그 가운데 여성천황의 즉위는 동일세대내의 왕위계승의 원칙과 집정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시되었다고 보았다.¹⁶⁾ 이 같은 시각은 性差를 전제로 하지 않는 여성천황론의 출발

14) 小林敏男 『古代女帝の時代』校倉書房, 1987년.

15) 荒木敏夫 『可能性としての女帝』青木書店, 1990년.

16) 大平聰 『日本古代王権継承試論』 『歴史評論』429, 1986년.

이라고 볼 수 있다. 荒木敏夫도 「世代内繼承」論의 입장에서 왕위계승자격을 가진 皇子들의 분쟁으로 왕권 내부의 위기가 심각해 질 때는 왕위계승의 범위 밖에서 분쟁을 조정하는 제3의 입장에 있었던 인격과 통치능력을 겸비한 「オホキサキ(太后)」가 천황에 추천되었다고 이해하고 있다.¹⁷⁾ 따라서 왕위계승에 있어서 황태자제가 성립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여성천황의 즉위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근대 이후 女性天皇否定論에 중요한 근거가 된 男系주의와 여성천황의 즉위를 특수한 것으로 인식하는 통설적 견해는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왕권의 변화과정에 대한 이해 없이 편견과 선입관 속에서 여성천황의 문제를 단순하게 논하는 것은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이 성립되었다고 하겠다.

Ⅲ. 皇極의 즉위 배경

皇極천황은 남편인 서명천황이 사망한 후 642년 즉위하여 645년 乙巳의 變 이후 同母弟인 經皇子(孝徳천황)에게 양위했다. 그리고 효덕천황의 뒤를 이어 655년에 齊明天황으로 다시 즉위하여 661년 九州의 朝倉橋広庭宮에서 사망했다. 황극은 왕위계승에 있어서 양위와 중조를 실현한 최초의 천황이라는 역사적 의의를 갖고 있다. 황극·제명이 왕위에 있던 시기는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기에 해당하는 중요한 시기였으나 결코 안정된 시기는 아니었다. 먼저 황극기의 대외관계는 백제의 쇠퇴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내정면에서는 蘇我蝦夷의 전횡과 上宮王家의 멸망, 蘇我本宗家の 멸망 등 정치적 혼란이 심각했던 시기이다. 한편 제명기는 백제 구원군의 파견, 왕위계승을 둘러싼 有間皇子의 變 등 내외정세가 긴박했던 시기였다.

敏達천황의 증손녀인 황극은 齊明天황 즉위전기에 의하면¹⁸⁾ 그녀는 用明천

17) 荒木敏夫, 前掲書, 37-39쪽.

18) 『日本書紀』卷二六齊明天皇即位前紀

天豐財重日足姬天皇。初適於橋豐日天皇之孫高向王。而生漢皇子。後適於息長足日広額天皇。而生二男。一女。二年立為皇后。見息長足日広額天皇紀。十三年冬十月。息長足日広額天

황의 손자 高向王과 결혼하여 漢皇子를 낳았다고 한다. 그 후 서명천황과 재혼하였고, 629년 서명이 천황으로 즉위하자 630년에 서명천황의 황후가 된 것이다. 서명천황과의 사이에서 中大兄皇子(天智천황)과 間人皇女(孝德천황황후), 大海人皇子(天武천황)을 낳았다. 서명천황이 사망했을 때 그녀는 서명천황의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위한 것이다. 이 점이 황극의 즉위를 논할 때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황극 즉위의 배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다. 서명천황의 사후 왕위를 놓고 성덕태자의 장남 山背大兄王을 지지하는 세력과 서명천황과 蘇我馬子の 딸 法提朗媛 사이에서 태어난 古人大兄皇子를 옹립하려는 세력이 대립하였다. 당시 大臣이었던 蘇我蝦夷는 山背大兄王의 즉위를 반대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古人大兄皇子를 추대하려면 많은 반발을 무릅써야 했으므로 절충안으로서 서명천황의 황후인 황극을 추대했다는 것이다.¹⁹⁾ 결국 황극의 즉위는 당시 정권의 실세였던 蘇我氏에 의해 소위 傀儡로서 옹립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즉위과정에 황극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견해는 당시의 왕위계승에서 혈통적 조건이 결정적이라는 전제 위에서 비주류의 茅渟王과 같은 왕족을 아버지로 둔 황극에게는 본래 왕위계승의 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통치력의 한계가 분명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7세기 왕위계승에서 천황이 아버지가 아닌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황극의 즉위 사정을 혈통 문제와 당시 왕위계승을 蘇我氏가 전부 주도했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은 문제를 너무 도식화시킬 우려가 발생한다. 그래서 황극이 즉위하게 된 배경과 원인을 『日本書紀』의 皇極紀를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검토해 보려고 한다. 우선 즉위시의 倭國 내부의 정치적 상황, 그리고 대외관계, 황극의 역할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겠다.

먼저 황극의 즉위 문제는 적어도 推古 사후의 정국의 움직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推古36년(628)년3월 병상에 있던 推古는 차기 천왕으로 유력한 후보였던 山背大兄王과 田村王을 불러 遺詔를 전하고 있다. 그러나 遺

皇崩。明年正月。皇后即天皇位。改元四年六月。讓位於天万豊日天皇。称天豊財重日足姬天皇。曰皇祖母尊。天万豊日天皇。後五年十月崩。

19) 滝浪貞子『女性天皇』集英社新書, 2004년, 4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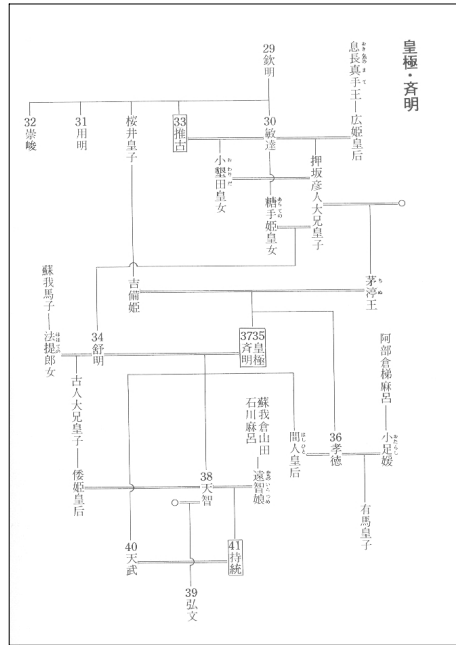
詔가 후계자를 분명하게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계문제는 群臣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推古 사후로 미뤄지게 되었고 왕위계승을 둘러싼 쟁란이 재발되었다. 그 결과 蘇我蝦夷는 山背大兄王을 옹립하려는 境部臣摩理勢를 토벌하고, 田村王의 즉위를 강행하였다. 여기에 서명을 천황으로 하는 왕권이 탄생했다.²⁰⁾ 그러나 山背大兄王이 왕권내의 유력한 세력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균열은 피할 수 없는 형국이었다. 이 같은 양측의 균열은 대외정책을 놓고 표면화되었다. 즉 推古紀의 多面外交가 舒明紀에 들어서는 백제와의 관계일변도로 변화해 他國과의 관계는 크게 후퇴하게 되는 것이다.²¹⁾ 원래 蘇我氏의 대외정책은 蘇我馬子 이래, 일관된 親百濟, 反親羅의 이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百濟—辺度의 대외정책의 변화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蘇我氏의 親百濟·反親羅政策은 唐의 對동아시아정책에 의해 동요하게 되는 것이다. 唐의 등장은, 倭國의 内部情勢에도 큰 변화를 끼쳤다. 이와 같은 사정 속에서 당시, 양국의 내부에서는 외교정책을 둘러싸고 두 개의 세력이 대립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정권쟁탈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당의 등장과 당에 대한 왜국 내부의 지지 세력의 집단화는 蘇我氏에게는 거대한 위협이어서 이와 같은 대립을 막기 위해서 황국의 즉위가 불가피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山背大兄王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山背大兄王은 田村王과 동세대의 인물로 당시 왕위계승의 관례로 보면 가장 유력한 후보였다고 할 수 있다. 蘇我蝦夷의 입장에서 보면 성덕태자의 아들인 山背大兄王은 화해가 불가능한 적대적 관계의 인물이고, 왕권의 중추인 천황으로 천거할 수 없는 인물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蘇我蝦夷의 주도에 의해 前大后

20) 蘇我氏가 田村王을 옹립한 이유는 그가 蘇我馬子의 여식인 法提郎媛을 처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松倉文比古 『古代の女帝』 新人物往來社, 2002년. 참조.

21) 推古朝後半에 단지 1회에 머물렀던 百濟使의 來日이 舒明朝에 들어 5회나 되며, 더욱이 그 가운데에는 王子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新羅로부터의 正式적인 使者의 來日은 단 1회 뿐으로 推古朝後半에 있어서 매우 緊密했던 關係와는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高句麗에서의 使者도 단지 1회에 머물고 있어 推古朝後半에 있어서 4회의 使者가 往來했던 것과 비교하면, 그 關係도 크게 後退하고 있다. 더욱이 中國과의 關係도 推古朝後半에는 3회의 遣使와 1회의 來使가 있었는데, 舒明朝가 되면 각각 1회 씩의 遣使와 來使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도 不和關係로 끝나고 있다. 金鉉球 『大和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년, 327쪽, 참조.

를 대왕으로 옹립하여 분쟁의 완화를 꾀했던 推古 추천의 선례를 보고 즉위를 요청한 것이라고 추측된다.²²⁾ 다시 말하면 황극의 즉위는 蘇我蝦夷의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교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황극이 즉위한 후에도 통설과 같이 蘇我氏의 괴뢰적 성격의 역할로 일관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日本書紀』皇極紀의 다음 기사들을 검토해보자.



皇極・齊明관계 系圖

사료-(1) 『日本書紀』皇極即位前紀

天豐財重日<重日此云伊柯之比。>足姬天皇。淳中倉太珠敷天皇曾孫。押坂彦人大兄皇子孫。茅淳王女也。母曰吉備姬王。天皇順考古道而爲政也。息長足日廣額天皇二年立爲皇后。

사료-(2) 『日本書紀』皇極元年七月戊寅條

臣相謂之曰。隨村々祝部所教。或殺牛馬祭諸社神。或頻移市。或禱河伯。既無所効。蘇我大臣報曰。可於寺寺轉讀大乘經典。悔過如佛所訟。敬而祈雨。

사료-(3) 『日本書紀』皇極元年七月庚辰條

於大寺南庭嚴佛菩薩像與四天王像。屈請衆僧。讀大雲經等。于時。蘇我大臣手執香鑪。燒香發願。

사료-(4) 『日本書紀』皇極元年八月甲申朔條

22) 荒木敏夫, 前掲書, 103쪽.

天皇幸南淵河上。跪拜四方。仰天而祈。即雷大雨。遂雨五日。溥潤天下。<或本云。五日連雨。九穀登熟。>於是。天下百姓俱稱萬歲曰至德天皇。

우선 사료-(1)은 황극의 출자를 기술한 것으로 주목되는 것은 “천황은 「古道」에 順考해서 政事를 돌보았다”라는 부분이다. 이것은 황극의 정치적 역할과 집정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古道」의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면 황극의 통치 이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는 「古道」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료(2)-(4)는 祈雨에 관한 기술이다. 그것은 황극원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長雨가 내렸지만, 6월에 들어서서 大旱이 발생하여, 村村의 祝部²³⁾에 의한 殺牛祭祀가 행해졌으나 효과가 없었고, 蘇我大臣이 百濟大寺에서 많은 승려에게 讀經을 시키고, 스스로 향을 피워 비를 기원하였지만 또한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8월 황극이 南淵의 河上에서 四方拜를 올리자 大雨로 연결되어 5일간 비가 내려서 백성이 크게 기뻐하여 황극을 칭송했다는 것이다. 먼저 『日本書紀』가 祈雨에 관한 서술을 村村의 祝部(民間 巫俗), 소아대신(仏教), 황극천황(天神 제사)의 3그룹으로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²⁴⁾ 확실하게 황극의 기우는 민간신앙을 모체로 한 것이면서 그것과는 분리되어 陰陽道적인 「天人相關」사상을 매개로 체계화 된 것으로, 지배자의 德政에 하늘이 보답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 蘇我氏의 실패는 하늘이 내린 정치비판적 성격이 강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무튼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하급 종교자의 주술적 방법, 소아대신의 불법도 효과 없이 황극 자신의 기우만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다. 이 내용은 『日本書紀』편자가 蘇我氏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개입된 점은 분명해서 기사의 신빙성에는 문제가 있지만²⁵⁾ 天皇이 직접 기우를 행한 것은 이것이 유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황극의 지배자로서의 역할과 성격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추측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무너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너는 신과 영혼을 몸소 받아드려 신령의 표현과 의사를 전하는 것이다. 이것

23) 村村의 祝部는 불교의 수용, 그리고 고유의 신앙의 의식화에 의해 점점 전통적 권위를 상실한 원시적인 주술적 신앙을 신봉하는 토착의 주술적 집단이라고 추측된다.

24) 倉塚脇子『古代の女』平凡社, 1986. 237쪽.

25) 田村円詔「陰陽寮成立以前」『史淵』82輯, 1968년.

은 여성천황의 무녀적인 성격을 암시하지만, 음양 천문, 지리 등 학문적 소양이 뒷받침된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성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司祭로서의 역할은 당시 통치자의 중요한 능력이자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료-(5) 『日本書紀』皇極元年七月丙子條

蘇我臣人鹿豷者獲白雀子。是日。同時有人。以白雀納籠而逆蘇我大臣。

사료-(6) 『日本書紀』皇極三年六月戊申條

於劔池蓮中有一莖二萼者。豐浦大臣妄推曰。是蘇我臣將榮之瑞也。即以金墨書而獻大法興寺丈六佛。

사료-(5), (6)은 蘇我氏가 상서에 깊숙이 관여한 경우이다. 사료-(5)는 蘇我大臣의 사동이 白雀의 새끼를 얻었는데, 그 날 동시에 白雀을 조롱에 넣어 蘇我大臣에게 보낸 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白雀은 상서물이나 하루에 두 번 상서물을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사료-(6)의 경우는 검지의 蓮속에 줄기는 하나인데, 두 개의 꽃을 단 것이 있었는데 豐浦大臣(蘇我大臣)이 마음대로 추측하여, 이것은 蘇我氏가 번영할 징조라고 하면서 상서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전자는 蘇我氏가 극단적으로 상서조작을 한 경우이고, 후자는 자신이 마음대로 규정하고 상서를 규정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황극기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蘇我氏가 상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것은 反蘇我氏세력의 확대에 의해 정치적 기반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황극의 집정능력에 대한 蘇我氏의 위기감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생각된다. 즉 황극2년 11월에 蘇我大臣의 공격에 의해 上宮家の 상징적인 인물이었던 山背大兄王을 죽음에 이르게 하자, 중대형황자를 중심으로 한 천황가와 僧旻 등의 反蘇我氏세력의 결집을 야기 시켰다. 천황의 위엄이 蘇我氏를 능가하게 되고 蘇我씨는 자신의 권위회복을 위해 실제로 상서를 조작했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사료-(5), (6)기사는 『日本書紀』의 편자가 양 세력의 항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 기술이라기 보다는 당시에 실제로 양 세력이 상서물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자신의 위엄을 내보이기 위한 고도의 정치술이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특히 이들 간의 항쟁이 노골적으로 들어나는 황극기에

霜雨, 旱 등의 이상기후, 지진, 월식, 상서 등 천변재이에 관한 기사들이 급증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료-(1)의 황극이 「古道」에 順考해서 政事를 돌보아서 至德의 天皇으로 묘사된 것은 황극이 일본 고유의 신을 제사지내고, 천문과 지리에 능통한 통치자로서의 중요한 덕목을 갖추었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다.

IV. 皇極讓位와 齊明 重祚

645년 황극이 효덕에게 양위한 날에 그녀는 「皇祖母尊」의 尊號를 헌정 받았다.²⁷⁾ 「皇祖母尊」의 「皇」은 天皇의 和訓인 스メラミ코ト의 스메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천황호의 성립 후에 추가된 수사이다, 「祖母」의 의미는 일반의 「할머니」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양친을 포함한 조상 전체를 의미하는 「祖」(オヤ)에 「母」字를 첨자하는 것에 의해서 모친인 것을 특정하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尊」은 神 혹은 그에 준하는 인격에 대한 존칭이다. 즉 皇統上의 女性尊長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²⁸⁾ 이것은 그녀가 효덕과의 관계가 대등 내지 상위에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왕위계승에 선왕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 증거이며²⁹⁾ 양자의 관계가 의례적인 모자관계에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다시 말하면 양위에 의해 처음 성립된 前大王과 現大王의 관계는 모자관계로 표현되었다. 이 처럼 왕권의 분립이 상위자와 하위자의 의례적 모자관계로 설정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황극의 양위에 대해서 기존의 연구는 『日本書紀』의 기술대로 葛城王이 왕위를 계승하려는 의도부터 설명되어 왔다. 즉 갈성왕이 즉위를 하지 못한 것은 「長幼의 序」의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中臣鎌足의 진언을 받아드려, 황극의 동생이면서 숙부에 해당하는 효덕에게 왕위를 양보했다고 이해하고 있다.³⁰⁾

26) 拙稿 「『日本書紀』에 보이는 祥瑞記事에 대한 一考察」 『慶大史論』9輯, 1996년.

27) 『日本書紀』孝德天皇即位前紀.

是日。奉号於豊財天皇曰皇祖母尊。以中大兄爲皇太子。(下略)

28) 『日本書紀』下, 補注25-2, 岩波書店, 1965년.

29) 遠山美都男, 前掲書, 82쪽.

그러나 황극의 生前양위, 重祚의 배경에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깊게 작용하고 있었다. 황극 양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乙巳의 變의 원인에 대해서 『日本書紀』는 古人大兄의 말을 빌어서 「韓政」의 대립이 蘇我氏멸망의 이유로 기술되어 있다. 이 「韓政」의 구체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외교노선의 대립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³¹⁾

한편 643년 唐은 “女君의 통치는 隣國에도 창피한 것으로 우리 宗室에 의해 國主로 할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이것은 대고구려전을 위해 신라원군의 조건으로 여왕을 폐하고 唐王族을 왕으로 하려는 계획이 숨어있었다. 황극이 통치자였던 왜국에도 이 문제는 충격을 주었을 것이 명백하다. 신라에는 647년 “女王不能善理”을 주장하여, 여왕의 폐위를 계획한 毗曇의 난이 발생했다. 왜 국내의 지배층에게도 唐에 의한 고구려원정(645), 왜국에게 요청한 신라원조(654) 등의 일련의 대외적인 압력 및 고구려의 백제접근이라는 사태에 대해서 唐과 거리를 두고, 欽明이후 蘇我씨노선을 계승하여 백제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독립파와, 唐에 영합하는 친당, 친신라파의 대립이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개신의 중심이었던 효덕은 여성천황을 승인하지 않는 당에 영합하기 위해서 황극을 강제퇴위 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퇴위한 황극과 중대형황자는 당에 대해서 독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신라에 대해서는 대국적인 입장에서 白村江 전투까지 연속되는 친백제노선을 중시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대화개신정권의 외교정책이 혼란되어 있어, 일원적인 외교방침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힘들지만, 근년 설득력을 얻고 있는 효덕을 개혁의 중심이라고 이해하는 논의에 따르면³²⁾ 改新期에 있어서 외교정책의 대립 축은 효덕과 황극, 중대형황자였다고 파악된다. 그리고 황극의 양위는 외교노선의 대립에 의한 강제적으로 퇴위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30) 遠山美都男, 前掲書, 80쪽.

31) 森公章은 韓政의 의미를 「三韓進調之日」의 의식석상에서 蘇我入鹿이 살해당한 것으로 해석하여 외교노선의 대립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東アジアの動亂と倭国』吉川弘文館, 2006년.

32) 대표적인 논저로 門脇楨二 「大化改新前後の政治過程」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81. 金鉉球 『大化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 条川賢 「乙巳の變と<大化>の新政權」 『日本古代の王權と王統』, 吉川弘文館, 2001. 등이 있다.

다. 아울러서 국내적 요인은 大化改新이라는 정치개혁이다. 大化改新은 민중 지배의 방식을 구조적으로 변혁하는 것이다. 즉 왕권에 봉사하는 것에 의해 전국의 민중을 파악·편성하는 종래의 방식을 개편하여 민중을 소재지별로 일정의 영역을 단위로 파악·편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었다.

遠山美都男는 황극은 推古로부터 계승된 飛鳥라는 도시공간의 창조, 건설에 매진한 것은 양자가 권력을 분담하고, 업무를 분담하여 서로의 과제에 전념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이러한 과제는 同時진행형으로 추진되었다고 가정했다.³³⁾ 특히 이들 간의 항쟁이 노골적으로 들어나는 황극기에 霜雨, 旱 등의 이상기후, 지진, 월식, 상서 등 천변재이에 관한 기사들이 급증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황극은 분명히 효덕에게 양위했지만 대왕권력의 전부를 위임한 것이 아니라 황극도 권력의 행사에 관여했을 가능성은 높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皇祖母尊』의 尊號, 당시 정권의 분열상황 등을 고려할 때 가능성은 크다고 하겠다. 또한 왕위를 他者에게 양도하는 것에 의해, 왕권의 일부를 분할하여 他者에게 양도하는 새로운 시도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황극과 효덕의 동반관계는 효덕의 난파천도로 균열이 생기고 그것이 표면화 된 것이 653년이다. 孝德의 難波천도는 당, 신라에의 적극적인 외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高向玄理의 신라과견(648), 遣唐使과견(653, 654)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사료-(7) 『日本書紀』白雉四年是歲條

是歲。太子奏請曰。欲冀遷于倭京。天皇不許焉。皇太子乃奉皇祖母尊。間人皇后并率皇弟等。往居于倭飛鳥河邊行宮。于時公卿大夫。百官人等皆隨而遷。由是天皇恨欲捨於國位。令造宮於山碕。乃送歌於間人皇后曰。舸娜紀都該。阿我柯賦古麻播。比枳涅世儒。阿我柯賦古麻乎。比騰瀾都羅武箇。

위의 사료에 의하면 중대형황자는 653년 難波長柄豐琦宮에 있던 효덕에게 다시 아스카로 돌아갈 것을 건의하였으나 효덕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대형황자는 효덕의 의사를 무시하고 아스카로 돌아왔다. 중대형황자는 자기 의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황극과 間人皇女와 함께 귀경했다. 이것은 양

33) 遠山美都男, 前掲書. 79-82쪽.

즉 균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실상 황극의 왕위 복귀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황극과 중대형황자는 백제와의 교섭을 계속하고 국토방위를 중시한 飛鳥천도(653)와 大津천도(667)을 행하고 강제퇴위에 대항하면서 효덕이 죽자 재차 왕위에 오르게 된다. 효덕과 중대형 황자의 불화가 표면화되어, 효덕의 아들이었던 有間皇子와 중대형황자간의 대립이 심각해졌다. 마침내 백치4년(653)에는 효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대형황자는 동생인 大海人皇子 등을 이끌고 難波宮으로부터 大和에 되돌아왔다. 더구나 間人皇后마저 함께 移宮했다. 그리고 다음 해 孝德은 죽게 된다. 중대형 황자의 즉위가 예상되었지만 62세의 황극이 즉위한다. 그 이유는 有間황자를 지지하는 그룹과 중대형 황자 그룹 사이의 갈등 속에서 국정을 조정할 책임은 역시 제명(황극)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황극은 대외적 환경의 변화와 내정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이를 타개할 다양한 능력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일본고대 여성천황론과 관련, 일본역사상 최초의 讓位와 동시에 최초의 重祚를 실현한 여제 황극·제명의 경우를 중심으로 즉위의 역사적 배경, 양위실현의 사정, 중조의 이유 등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종래 『日本書紀』에 산재하는 기우, 상서, 재이 등에 관한 기사는 설화적·주술적·비합리적인 것으로 배제되거나, 또는 작위적·정치적인 기사로 간주하여 『日本書紀』편자에 의해 가필·조작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천황의 무녀적인 성격을 암시하지만, 천문, 지리 등 학문적 소양이 뒷받침된 유능한 통치자로서의 성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덕목은 당시 통치자의 중요한 능력이자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종래의 황극·제명의 즉위, 양위, 중조의 문제에 관한 일본학계에서의 논의가 주로 고대사회의 특질이나 국내정치의 문제로 취급되어 왔고, 양위 문제에 관해서도 최근에 이르러 대외정책의 문제와 관련시켜 이해하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정치, 대외정책, 더 나아가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적 전개과

정·특징을 유기적 관계 속에서 파악하여 전체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여성천황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평가는 왕위계승은 남계주의가 일본 고유의 전통이라는 것과 특수한 예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적어도 황극·제명의 경우는 여성천황은 남성천황과는 다른 잠재능력이 평가되어 즉위한 것이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즉위하여 실제로 행한 역할은 각각 성격을 달리 한다고 하겠다. 특히 일본과 유사하게 고대 한국과 중국에도 여성 리더쉽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라는 틀 속에서 문제에 접근해야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제명의 역할과 성격에 대해서는 논하지 못했다. 금후의 과제로 하겠다.

참고문헌

- 金善民 「고대 일본여성의 정치적 역할과 지위」, 『日本史学研究』19집, 2004년
 _____ 「『日本書紀』에 보이는 祥瑞記事에 대한 一考察」 『慶大史論』9輯, 1996년
 金鉉球 『大化政權の對外關係研究』, 吉川弘文館, 1985년. p.327
 荒木敏夫 『可能性としての女帝』, 青木書店, 1990년. pp.39-40, pp.103
 井上光貞 「古代の女帝」, 『日本古代國家の研究』, 岩波書店, 1965년
 上田正昭 『日本の女帝』, 講談社, 1971년
 折口信夫 「여성천황考」, 『折口信夫全集』第20券, 中央公論社, 1956년
 大平聡 「日本古代王權繼承試論」, 『歴史評論』429, 1986년
 門脇楨二 「大化改新前後の政治過程」 『大化改新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1981
 喜田貞吉 「中天皇考」 『喜田貞吉著作集』第13券, 講談社, 1981년
 倉塚脇子 『古代の女』, 平凡社, 1986년.p.237
 胡口靖夫 「百濟豊璋について」, 『国学院雑誌』 80-4号, 1979년
 小林敏男 『古代女帝の時代』, 校倉書房, 1987년
 条川賢 「乙巳の変と<大化>の新政權」 『日本古代の王權と王統』, 吉川弘文館, 2001년
 滝浪貞子 『女性天皇』, 集英社新書, 2004년.p.49
 遠山美都男 『古代日本の女帝とキサキ』角川書店, 2005년.pp.273-274
 仁藤敦史 『女帝の世紀』角川書店, 2006년.p.8
 松倉文比古 『古代の女帝』 新人物往来社, 2002년
 森公章 『東アジアの動乱と倭国』吉川弘文館, 2006년

- ❖ 투고일 : 2009. 12. 31.
- ❖ 심사일 : 2010. 1. 11.
- ❖ 심사완료일 : 2010. 1. 20.